

해외건설 관계법령 및 정책방향

김선태 / 건설교통부 해외건설과 사무관

최근들어 전문건설업계의 해외건설면허 취득이 늘어남에 따라 설비건설업계에서도 해외건설면허를 확보한 회원사가 급증하고 있다.

해외건설면허는 좋은 국내시장을 탈피함은 물론 고품질 확보로 국제경쟁력 강화등 많은 장점이 있어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IMF한파에 대한 돌파구의 일환으로 해외건설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외건설협회가 지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회원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해외건설 실무교육 신입과정」교육은 관련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본지는 독자적인 해외건설 진출에 미숙한 설비건설업계의 사정을 고려, 「해외건설 실무교육 신입과정」교육중 해외건설 관계법령 및 정책방향을 게재한다.

I. 해외건설촉진법 개요

[1] 목적

해외건설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산업의 진흥과 국제수지 향상에 기여한다.

[2] 주요 글자

1. 총칙 및 해외건설업 등록(1~9조)

1) 해외건설공사의 의미 : 해외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

(1) 도급공사, 개발형공사 등 해외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를 포함

(2) 현지법인의 해외공사도 포함(현지법인의 해외공사실적도 국내 도급한도액 결정시 반영됨)

(3) 현지법인이 해외건설을 수행할 경우에도 국내 본사의 해외건설업 등록 필요

* 해촉법규정 외는 건설업법 적용, 단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는 전기통신공사업법 적용

2) 해외건설업의 등록

(1) 해외건설업의 종류(10개 업종) : 종합, 일반, 특수, 조경, 전문, 전기, 통신, 환경, 엔지니어링, 수주 및 개발

(2) 등록기준 : 국내 건설업 면허 등 관련 국내 면허

기술능력(기술자 보유현황, 인정기술자는 제외)
자본금(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3) 국내 건설공사와 마찬가지로 등록업종과 관련된 해외공사만을 수행할 수 있다.

2. 해외공사의 수행절차 및 보고(10~13조)

1) 공사정보 입수 및 수주활동 보고(입찰공고 10일 이내)

2) 수주경합업체 자율조정(필요시)

3) 입찰참여 : 수행계획 신고(입찰예정일 20일 전까지)

4) 입찰결과 : 입찰결과 보고(입찰일 등으로부터 15일 이내)

5) 계약체결 : 계약체결 결과보고(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6) 착공 및 시공 : 시공상황보고(매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

국산 기자재사용실적 보고(”)

7) 준공 : 준공보고(준공일로부터 15일 이내)

3. 해외공사의 조정·지원(14~18조)

1) 수주경합조정 : 건교부장관은 해외건설업자 상호간에 수주경합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정을하거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 「해외건설공사수주협의에 관한 규정」을 해외건설협회에서 '94. 11부터 시행중에 있다.

2) 진출업자의 지정 : 건교부장관은 과당경쟁 방지 및 공사의 부실수행방지를 위해 국가별 진출업자를 지정하거나 원·하도급자를 구분·지정 할 수 있다.

3) 우수해외건설업자의 지정 : 신시장을 개척하거나 수주실적이 우수한 업자에 대하여 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합작수주시공의 권고 등 : 해외건설업자 2인 이상의 합작수주 시공 및 기술개발투자를 권고할 수 있다.

4. 해외건설진흥기금(19~22조)

1) 재원 : 정부출연금, 해외건설사업자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2) 용도 : 국제협력, 연구개발 등 해외건설진흥

을 위한 사업

3) 관리 : 건교부장관(해외건설협회에 관리업무 위탁)

5. 해외건설협회(23~28조)

1) 업무 : 해외공사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국제 민간협력 추진 등 외에 건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수행

2) 설립 : 해외건설업자는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해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날로부터 협회 회원이 된다.

3) 지도감독 : 건교부장관은 지도·감독권한을 갖는다.

6. 감독(29~36조)

1) 영업정지

(1) 2년 : 해외공사의 부실수행, 부정행위, 정부시책의 누설

(2) 1년 6월 : 해외공사 계약 불이행

(3) 1년 : 건교부장관의 조정거부, 수주질서문란

(4) 3월 : 낙찰후 계약포기, 타업자의 정보도용, 기타 법령 및 처분위반

2) 등록취소

(1) 부정한 방법의 등록 및 등록기준 미달(강제규정)

(2) 국내관련 면허의 취소(강제규정)

건설업면허의 취소를 제외하고는 건설업법상의 제재조치(부정당업체지정, 영업정지 등)가 해외건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3) 정부시책의 누설로 인한 국가이익의 중대한 지장 초래(임의규정)

(4) 3년 이상 해외공사 무실적(임의규정)

3) 영업정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의 해외공사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한하여 계속 수행가능

4) 대리시공

건교부장관은 부실시공의 경우 다른 해외건설

업자에게 대리시공 토록 할 수 있다.

7. 벌칙(37~41조)

- 1) 벌금(1천만원~5천만원 이하) 또는 징역형
(1년~10년 이하)
 - (1) 부실시공으로 인한 공사중단
 - (2) 준공후 하자발생
 - (3) 부정한 방법의 등록 및 미등록자의 해외건설업 영위
- 2) 과태료 부과(150~300만원)
 - (1)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 (2) 각종 신고·보고의무 해태 및 허위신고·보고
 - (3) 자료제출, 조사의 거부 또는 기피
- 3) 수행신고시 신고한 공사업종 이외의 해외건설업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수행계획 허위신고로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II. 수주질서 유지 규정

[1] 수주경합조정제도(해외건설촉진법 14조)

1. 현행규정

동일 해외공사에 대하여 우리 해외건설업자 상호간의 수주경합으로 인한 수주질서의 문란이나 대외신용의 손상을 막기 위해 건교부장관은 필요한 조정을 하거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해외건설공사 수주협의에 관한 규정」

1) 해외건설협회에서 업체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조정규정을 제정('94. 11)하여 시행중(과거의 「해외건설 자율조정 규정」 대체)에 있다.

2) 동일공사에 대하여 4개업체 이상 경합될 경우 경합업체들이 수주협의회를 구성, 3개업체 이내로 입찰참여 업체 조정

* 종전에는 2개업체 이상 경합될 경우 단수조정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자율화 추세에 따라 입찰참여업체수 확대

[2] 진출업자지정제도(해외건설촉진법 15조)

1. 지역별 진출업자 지정제도

1) 건설교통부장관은 과당경쟁 방지 및 시장 여건에 따라 국가별, 지역별로 진출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92.11에 해외건설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세부지침을 폐지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92.11 폐지 당시 19개국에 27개사 지정)

수주질서확립 및 수익성위주의 선별수주 전쟁 등 현지의 비상사태 및 외교적 고려 등 특정사안에 따라 진출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보유

2. 원·하도급자 지정제도

1) 건설교통부장관은 업체의 건실한 경영과 해외공사의 부실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94년부터 전문건설업체도 해외진출이 가능해짐으로써 전문업체의 건실경영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수주경쟁을 저항하고 원·하도급 계열화를 추진하기 위한 규정이나, 아직 전문업체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점을 감안, 현재 원·하도급을 지정한 예는 없다.

[3] 합작수주시공 권리제도(해외건설촉진법 17조)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대규모 공사의 수주·시공을 위해 해외건설업자 2인 이상의 합작수주 및 시공을 권유할 수 있다.

[4] 과거의 관련규정('94. 1. 1부터 폐지)

1. 도급허가제

해외공사 수주질서 확립과 수익성 공사 선별수주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는 건설부장관의 입찰참여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사전수주심사제도

해외공사의 수익성제고 및 부실예상공사의 수주를 억제하기 위해 모든 도급공사의 경우 도급심사를 실시하고 저가계약의 경우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수주의 적정여부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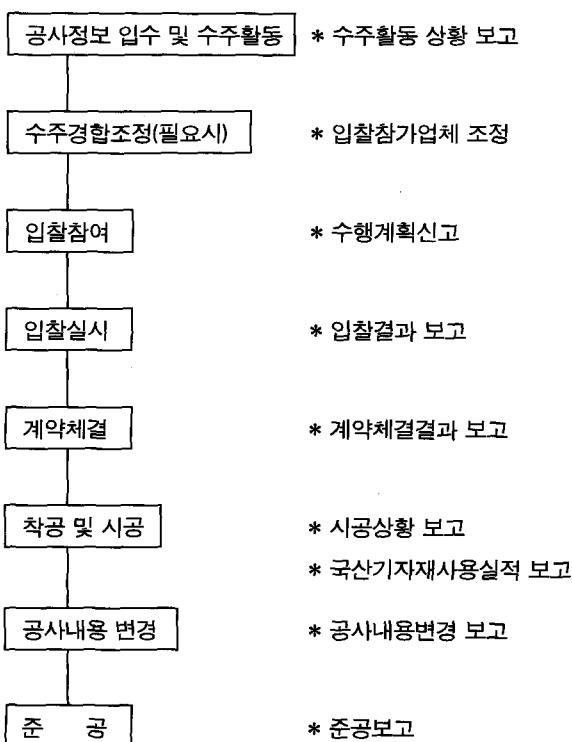
3. 해외공사 도급한도액 제도

해외건설공사의 견실한 시공을 위해 1건 공사

의 도급한도액과 연간 도급받을 수 있는 총한도
액 설정

III. 보고 및 신고제도

[1] 해외공사 수행과 관련된 보고제도



※ 별도 보고사항

해외공사실적보고, 다음연도 해외공사수주계획 보고,
해외공사에 따른 제반시공보고, 현지법인 설립(인수)신고

1. 해외공사 수주활동 상황보고

- 근거규정 : 법 13조, 시행령 17조, 시행규칙 11조
1) 보고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1) 도급공사 : 입찰공고일, 입찰초청일, 수의 제의일로부터 10일 이내
(2) 개발형공사 : 기본사업계획수립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비서류
(1) 입찰초청서 또는 입찰공고문
(2) 개발형공사의 경우 기본사업계획안
(3) 보고기관 : 해외건설협회
(4) 허위보고 또는 미보고시 과태료 : 200만원

2. 해외공사 수행계획 신고

- 근거규정 : 법 11조, 시행령 15조, 시행규칙 9조

- 신고기한
(1) 도급공사 : 입찰예정일 20일 전까지
(2) 개발형공사 : 공사시행일 30일 전까지
(3)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4) 신고기관 : 해외건설협회,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수주경합조정 또는 권고하는 경우에 한함)
(5) 허위보고 또는 미보고시 과태료 : 300만원

3. 해외공사 입찰결과 보고

- 근거규정 : 법 13조, 시행령 17조, 시행규칙 12조

- 보고기한 : 사유발생일(입찰일 등)로부터 15일 이내
3) 보고기관 : 해외건설협회,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수주경합조정 또는 권고하는 경우에 한함)

※ 개발형공사는 보고제외

- 허위보고 또는 미보고시 과태료 : 200만원

4. 해외공사 계약체결 결과 보고

- 근거규정 : 법 13조, 시행령 17조, 시행규칙 13조

- 보고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1) 도급공사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2) 개발형공사 : 진출국의 최종사업승인일 등으로부터 15일 이내
(3) 구비서류
(1) 해외공사계약체결 결과 보고서(분석)

- (2) 계약공사 개요서
 (3) 계약서사본, 개발형공사인 경우 진출국의
 최종사업승인서
 4) 보고기관 : 해외건설협회
 5) 허위보고 또는 미보고시 과태료 : 200만원
- 5. 해외공사 시공상황 보고**
- 1) 근거규정 : 법 13조, 시행령 17조, 시행규칙
15조
 - 2) 보고기한 : 매분기 종료후 30일 이내
 3) 보고기관 : 해외건설협회
 4) 허위보고 또는 미보고시 과태료 : 200만원
- 6. 국산기자재 사용실적 보고**
- 1) 근거규정 : 법 13조, 시행령 17조, 시행규칙
16조
 - 2) 보고기한 : 매분기 종료후 30일 이내
 3) 보고기관 : 해외건설협회
 4) 허위보고 또는 미보고시 과태료 : 200만원
- 7. 공사내용 변경보고**
- 1) 근거규정 : 법 13조, 시행령 17조, 시행규칙
18조 1항
 - 2) 보고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3) 기재사항 : 공사명, 변경내용, 변경일
 4) 보고기관 : 해외건설협회
 5) 허위보고 또는 미보고시 과태료 : 200만원
- 8. 해외공사 준공보고**
- 1) 근거규정 : 법 13조, 시행령 17조, 시행규칙
17조
 - 2) 보고기한 : 사유발생일(준공일)로부터 15일 이내
 3) 기재사항 : 일시, 장소 및 관련공사명, 관련자, 사고내용(피해상황 포함), 사고발생원인
 4) 보고기관 : 해외건설협회 및 건설교통부
 5) 허위보고 또는 미보고시 과태료 : 200만원
- 9. 해외공사 실적보고 및 다음연도 수주계획
 보고**
- 1) 근거규정 : 법 13조, 시행령 17조, 시행규칙
14조
 - 2) 보고기한
 - (1) 해외공사실적보고 :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연도 2. 15일까지
 - (2) 다음연도 해외공사수주계획 보고 : 매년 12. 15까지
 - (3) 보고기관 : 해외건설협회
 - (4) 허위보고 또는 미보고시 과태료 : 200만원
- 10. 현지법인 설립(인수)신고**
- 1) 근거규정 : 법 10조, 시행령 13조, 시행규칙
8조
 - 2) 보고기한 : 설립일 또는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3) 보고기관 : 해외건설협회
 4) 허위보고 또는 미보고시 과태료 : 150만원
 ※ 현지법인의 해외건설활동도 본사의 해외건설활동과 동등하게 취급되므로 각종 보고·신고 제도가 동일하며, 현지법인의 해외건설 실적도 국내건설 도급한도액 산정시 합산된다.
- 공사와 관련한 각종 신고 및 보고제도는 수주질서 유지를 위한 조항일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 등 각종 정부지원의 근거가 되며 신고한업체외에 다른업체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기 신고한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2] 등록사항 변경신고

1. 신고기관 및 처리기관
 - 1) 신고기관 : 건설교통부
 - 2)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2. 신고기한 및 과태료
 - 1)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2) 기한내 미신고시 과태료 : 150만원
 - 3) 사유발생일은 등기부등재일이 아닌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함(예 :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이 변경될 경우 사유발생일은 주주총회일임)

3. 신청서 및 첨부서류

변경내용	첨 부 서 류
상 호	1. 법원 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해외건설업등록증
대표자 및 성명	1. 법원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호적초본) 2. 해외건설업등록증 3. 외국인등록표등본(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4.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지, 호주와의 관계 명시)
영업소 소재지	1. 법원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해외건설업등록증
임 원	1. 법원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2.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지, 호주와의 관계 명시)

IV. 해외건설관련제도

[1] 해외직접투자제도

1. 의의

1) 일반적 의미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는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출자를 의미

허가절차

2) 기타 의미

(1) 외국법인에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한 상황 기간 1년 이상의 금전 대여

(2)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영업소의 설치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의 지급

(3) 기타 외국에서 기업을 경영하거나 일정한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

* 해외건설업 등록을 한 자만이 해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현지법인 설립)가 가능하며(해외건설촉진법 2조), 현지법인도 국내 본사의 해외건설업등록 영업범위 내에서만 해외건설업 수행을 할 수 있다.

2. 허가절차

[표 참조]

3. 해외투자심의위원회

1) 구성

(1) 위원장 : 재정경제원 2차관보

(2) 상임위원 : 재경원, 통산부의 담당국장, 은감원 여신담당 부원장보, 주거래은행 담당이사

(3) 비상임위원 : 건설교통부(건설경제심의관), 외무부, 농림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 국장

* 비상임위원은 당해부처(사업주무부처)와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일 경우에만 심의에 참여

2) 기능 : 해외직접투자사업의 타당성, 제재, 동향분석, 기타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의 심의

3) 5,000만불 이상 해외투자시 절차예(심의필요 안전)

(1) 신고기관(지정외국환 은행 등)에 투자신고

(2) 신고기관은 재경원에 검토의견과 함께 해

투자금액	과거제도	개정('97. 8)
1,000만불 이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인증	모든 해외투자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신고수리제로 전환
1,000만불 ~ 5,000만불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해외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축소 - 5천만불을 초과하는 투자 중 · 투자기법의 기본금 초과 · 부실기업의 투자 · 부실현지법인에 대한 투자
5,000만불 ~ 1억불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약식 심의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1억불 초과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정식 심의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외투자심의위원회 안건 제출

- (3) 위원회 담당위원들의 심의
- (4) 신고기관의 해외투자 신고수리

[2] 해외부동산개발제도

1. 의의

자신의 책임하에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여 시공 과정 등을 통하여 부동산 가치를 증대시킨 후 이를 분양·매각하거나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

2. 사업대상 부동산

1) 취득할 수 있는 해외부동산

(1) 취득자 : 해외건설업 등록을 한 자 및 그 현지법인

(2) 대상 : 해외건설 활동의 일환으로서 개발 후 임대·분양공급하거나 그 개발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개발후 운영하기 위한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3) 판매대상 : 외국인 및 우리기업의 현지법인·해외지사(내국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일반적으로 제한)

2) 취득할 수 없는 해외부동산

(1) 주거용, 사업용 등 직접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는 부동산

(2) 자산운용 및 투기목적의 부동산

3) 해외부동산 취득허가

(1) 1,000만불 이하 : 한국은행총재에 신고

(2) 1,000만불 이상 :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해외투자에 준하여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음

[3] 수·출입 은행자금(연불금융) 지원제도

1. 개념

1) 건설업체가 공사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어려운 경우, 해외건설 지원차원에서 수출입은행이 융자하는 정책금융

2) 근거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 제1항 「자

금」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자금지원 지침」

2. 지원요건

1) 융자한도 : 업체별 연간 2억불, 공사별 1억불

2) 융자기간 : 10년 이내

3) 융자범위

(1) 기술제공전(시공전) 금융 : 계약금액 90% 범위내 국내소요자금 또는 계약금액50% 범위내의 국내외 소요자금

(2) 기술제공후(시공후) 금융 : 선수금을 제외한 계약잔액범위의 국내외 소요자금

3) 지원대상자 : 시공업자인 해외건설업자 및 발주자

5) 대출이자율

(1) 기술제공전 금융 : 년 9% 내외

(2) 기술제공후 금융 : CIRR(상업참고금리)로서 년 7~8% 내외

6) 선수금수령의무 : 계약액의 15% 이상

7) 필요외화가득률

(1) 융자대상금액의 30% 이상

(2) 건설교통부장관의 추천 등이 있을 경우 15% 이상도 가능

※ 융자기간, 대출이자율, 선수금수령의무 등은 OECD 가이드라인에 의해 융자조건 완화가 불가능함

3. 운용

1) 재원 : 정부출연금,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대출금 운용수익

2) 운용자금 : '97년 5조 700억원(수출자금)

* 선박, 플랜트, 기계류, 해외건설 등과 같이 배정

3) 운용실적 : '85년 지침제정 이후 아직까지 해외건설에 대한 지원실적 없다.

4) 유용성 : 시공자금 유효성 공사의 증가추세에

대응할 수 있다.

5) 지원절차 : 수출입은행과 사전협의 → 예비승인 → 공사계약 → 본승인

[4] 수출보험제도

1. 개념

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중 통상의 보험으로서는 구제하기 어려운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서 일반 상업보험으로는 운영이 곤란하므로 수출지원의 측면에서 국가가 위험을 담보하는 비영리 정책보험으로 운영함

2. 운영체계

- 1) 감독기관 : 통산산업부
- 2) 운영기관 : 한국수출보험공사
 - (1) 신용조사 및 보험관련 업무 수행
 - (2) 수출신용보증제도 운영
 - (3) 수출보험기금 관리
 - (4) 수출보험의 종류

단기수출보험, 수출어음보험, 중장기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해외공사보험, 해외투자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시장개척보험,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 등

3. 해외건설관련 보험

1) 해외공사보험

해외공사 계약체결후 그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공사의 대가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해외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여된 장비에 대한 권리가 박탈되므로써 입계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2) 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이 해외공사계약 등과 관련하여 수출보증을 한 경우에 보증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계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3) 해외투자보험

해외투자를 한 후 투자대상국에서의 수용, 전

쟁, 송금위험으로 인하여 그 해외투자의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 이행으로 입계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4. 이용실적

금융기관의 수출보증보험 이용 이외에는 해외건설업체의 수출보험이용 실적이 미미하다.

* '96 상반기 대림엔지니어링이 인도 열병합 발전소공사와 관련 100억원의 해외공사보험에 부보한 바 있으며 (주)대우가 파키스탄 라호르 이슬라바마드 도로공사와 관련 3500억원의 해외공사보험에 부보하는 등 최근 해외공사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5] 현지금융 및 보증제도

1. 현지금융 등 외환관리제도

1) 현지금융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공사에 필요한 현지 경비를 현지에서 차입할 경우 국내 주거래은행이 담보용으로 보증신용장을 발급, 현지금융을 용이하게 하여주는 제도

* 현지금융 이용한도 및 비율상환제도는 폐지되었음('94)

2) 계약신고

해외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계약인증을 받아야 하나 신고제로 전환

3) 거주자계정의 설치

해외건설업자는 자금관리를 위하여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별도의 거주자계정을 설치하고 국내에 입금되는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을 동 거주자계정에 예치·운용하여야 한다.

4) 현지자금관리

해외건설업자는 자금조달 및 운용사항에 대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2. 대외외화표시지급보증제도

해외건설사업을 위해 외국환은행은 다음과 같은 대외외화표시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 줄 수

있다.

1) 입찰보증(Bid Bond)

입찰에 따르는 제반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응찰자가 발주처에 입찰시 현금대신 제출하는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지급확약서

2)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공사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낙찰자가 발주처에 제출하는 보증서

3)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계약자가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의 환급을 보증하기 위해 발주처 앞으로 제출하는 보증서

4) 하자보증(Maintenance Bond)

발주자가 공사완료후 하자보수기간중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지 않을 때 발주자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증서

5) 현지금융담보지급보증(Stand-by Letter of Credit)

현지 또는 제3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보증하기 위한 지급보증서

6) 관세담보보증(Customs Bond)

공사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비, 자재 등의 현지 통관시 부과되는 관세의 납부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현지 세관 앞으로 제출하는 지급보증서

6. 기자재 무환반출입

1) 해외공사를 차질없이 공기내에 완공하고 기자재를 해외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후 국내공사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장비, 자재와 근로자용 일용품 및 식료품을 무역거래상의 특례수출입 물품으로 명문화하여 일반수출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기자재 무환반출입 확인업무 : 해외건설협회

7. 산업설비 수출동의

1) 산업설비 및 관련공사를 설계·시공·기자재 공급 일괄수주(턴키베이스)할 경우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해외건설촉진법상의 사전 신고제도 대신 산업설비수출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대상 : 일괄수주공사로서 대외무역법상의 산업설비 수출일 것

3) 절차

(1) 공사계약체결 → 통산부에 산업설비수출승인요청 → 통산부는 건교부에 시공부분에 대한 동의요청 → 건교부의 동의 → 통산부의 산업설비 수출승인

(2) 건교부의 산업설비수출동의는 해외공사 수행계획신고수리와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된다.

* 통산부에 산업설비 수출승인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설비 시공부분에 대한 동의도 받을 수 없어, 이 경우 해외공사에 대한 아무런 신고없이 해외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설비를 일괄수주로 수출할 경우 통산부의 수출승인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산업설비 수출계약전에 별도의 수행계획신고를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 해외건설 중고장비 수입

1. 근거법규

대외무역법 18조, 수출입별도공고(통산부고시 1997-222)

해외건설기계수출입요령(건교부고시 1998-100)

2. 수입추천

1) 수입추천신청 : 해외건설업자

2) 수입추천기관 : 건설교통부(대한건설기계 협회에 위탁)

3) 수입추천장비(7개품목)

불도우저(앵글도우저 포함), 굴삭기, 로우더, 기중기, 지게차, 덤프트럭, 준설선

* 이 품목 이외에는 수입자유화

4) 수입추천절차

(1) 해외건설업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장비가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임을 관할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

(2)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수입추천을 신청(대한건설기계협회에 신청)

5) 수입장비의 용도제한

(1)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2) 해외건설현장에 재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ODA제도

1. 기본방향

1)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원조는 유상원조로서 장기저리의 경협차관을 제공하는 EDCF와 무상원조로서 KOICA 사업 등이 있다.

2) 대 개도국원조는 우리나라의 OECD 가입과 더불어 GNP 대비 0.2%(권고사항)까지 확충하여야 하나 '95년말 현재 0.03%에 불과하다.

3)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간의 연계가 미흡하고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건설분야 사업에 대한 지원이 적다.

4) 대 개도국원조사업은 빨주시 우리 업체에 대해 참여우선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 사업을 통해 우리업체의 대 개도국 진출기반 확보를 도모하며 개발조사사업이나 다단계사업의 초기단계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본사업 또는 후속사업을 우리업체가 수주할 수 있다.

2.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1) 기금용도

(1) 주로 개도국정부에 대해 원조성격이 강한 장기저리의 차관자금으로 제공

(2) Tied Loan 형태의 차관제공이 많으나 OECD는 무역질서 왜곡과 선진국간 자본재 수출 과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Untied Loan을 권장

2) 개도국 융자조건

(1) 이자율 : 년 1~5%

(2) 상환기간 : 35년 이내(거치기간 10년 이내 포함)

(3) 대상국을 국민소득 등에 따라 5개그룹으로 나누어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3) 기금운용

(1) 운용주체 : 재정경제부

(2) 운용 및 관리집행업무 : 한국수출입은행

(3) 기금운용위원회 : 관련부처 장관급 구성

4) 지원절차

(1) 개도국정부의 지원요청(대상사업 명시)

(2) 수출입은행의 예비심사

(3) 관계부처 실무협의

(4) 정부조사단 또는 수출입은행 심사단 현지 파견

(5)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지원방침 결정

(6) 정부간 협정 및 차관협약 체결

5) 기금운용실적

(1) '87~'97까지 11,288억원 기금조성, 9,166억원 지원승인(25개국 78개사업)

(2) 이중 9개국 10개사업(165.55백만불)우리 해외건설업체가 수주

3. 무상원조

1) 대외무상기술용역제공사업

(1) 개도국에 대하여 무상으로 타당성조사·설 시설제 등의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후속공사에 대한 우리업체 수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여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84년부터 해외건설 진흥 기금 및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사업추진

(2) '84~'95까지 약 95억원으로 10개국 28개 사업 지원

(3) '94년 사업이후 관련업무를 KOICA로 이관

2) KOICA(한국국제협력단)

(1) 대 개도국 무상원조를 위해 '91. 4 설립하였으며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던 무상원조사업들을 KOICA로 이관·효율적인 지원사업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2) 주요 사업내용 : 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기자재공여, 기술용역제공, 개발조사사업 등

3) 개발조사사업

(1) 사업내용 : 종합개발계획, 기초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2) 사업절차

① 수요조사 : 재외공관, 관계부처, 개도국정부로부터 사업요청접수

* 건교부에서 현지공관, 해외건설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사업신청

② 조사단 파견 : 현지조사실시

③ 사업실시결정 : 사업실시 결정 및 외무부승인

④ 정부간 합의서 체결

⑤ 사업실시 : 국내 용역기관과 용역계약 체결

⑥ 최종보고서 작성 : 상대국정부에 제공

(3) 사업실적 ('91~'96) : 12개국 24건 103.7억 원

V. WTO협정 및 정부조달협정

[1] WTO 협정 문의 구성 및 타결경위

1. WTO 협정문의 구성

1) 최종의정서

최종협정문의 전문성격으로서 협상의 결과 및 향후 절차 등에 대한 포괄적인 선언

2) WTO 설립협정

(1) 본문 성격으로서 세계무역기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상세한 규정과 협상결과물인 다자간 무역협정, 복수국간 무역협정을 내용으로 포함

(2) 다자간 무역협정 : 총 17개

① 상품무역, 농업, 섬유, 기술장벽, 보조금, 긴

급수입제한조치, 서비스 무역, 분쟁해결규칙 등 규정

② WTO 회원국 모두에 적용됨

(3) 복수국간 무역협정 : 총 4개

① 민간항공기무역, 정부조달, 국내낙농, 국제우육 등 규정

② WTO 회원국중 동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 사이에서만 적용

(3) 각료결정 및 선언 : 23개

협상결과의 이행과 관련한 행정적·기술적 사항 포괄

2. 협상경위

1) 푼타 델 에스테 각료선언('86. 9) : 다자간 무역협상 개시 선언

2) 몬트리올 중간평가회의('88. 12) : 관세감축 및 개도국우대원칙 합의

3) 브랏셀 각료회의('90. 12) : 각료급 무역협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농산물 보조금감축 문제로 타결실패

4) 던켈 최종안제시('91. 12) : 당시 GATT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최종안제시

5) 블래어하우스 협의('92. 11) : 미·EC간 농산물 보조금감축 협의

6) UR협상 종결('93. 12) : 최종의정서 및 부속협정문 채택

7) 마라케쉬 각료회의('94. 4) : 협정서명 및 각료선언 채택

[2] 각국의 건설시장 개방 내용

1. 우리나라의 건설시장 개방 내용

1) 민간 건설시장

* UR협상 양허안 및 외국인투자개방 예시계획에 따라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이 진행되고 있다.

(1) 시공분야

① 100% 단독투자의 허용시기

일반건설업 : '94. 1부터(지사의 경우는 '96부터)

전문건설업 : '96. 1부터(지사의 경우는 '98부터)

② 외국건설업체도 건설업면허, 도급한도제, 의무하도급제 적용

(2) 건축설계분야

① '96년부터 한국건축사와의 공동계약에 의한 건축설계 서비스공급 허용

② 현재 외국건축사 자격을 보유한 자는 국내 건축사시험중 건축법규, 건축설계에 대한 시험만 합격하면 국내 건축사 자격 부여

③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위해서도 국내 건축사 자격취득 필요

(3) 토목설계 분야 : 기 개방

(4) 건설기계 및 장비임대서비스 분야 : '96년부터 100% 외국인투자 자유화

(5) 건설엔지니어링 및 감리(토목)분야

① 기 개방('93)

②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필요

(6) 측량 분야 : 기 개방

(7)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감정업, 골재채취업, 건설기계장비 임대업, 유원지운영업 : '96.1 개방

(8) 토지개발공급업, 건물분양공급업, 건물임대업 : 개방유보

2) 공공건설시장

* GATT/정부조달협정에 따라 '97. 1부터 개방

(1) 시공분야

① 중앙정부 : 500만 SDR(약 53억원) 이상 공사에 입찰참여 허용

② 지방자치단체 : 1,500만 SDR(약 160억원) "

③ 정부투자기관 : "

* 외국업체 참여시 국내 건설업면허 필요

(2) 설계·감리 등 기타 건설관련 서비스 분야

① 중앙정부 : 13만 SDR(약 1.5억원) 이상 개방

② 지방자치단체 : 20만 SDR(약 2.2억원) "

* 책임감리 : 기개방

3) 개방일정

(1) '97. 1. 1 개방(정부조달협정 기가입국은 '96.1.1 개방)

(1) 가입국 : 22개국(미국, 카나다, EU 12개국, 핀란드,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한국)

*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 사이에만 동 협정이 적용됨

2. 주요국의 건설분야 정부조달시장 개방내용

단위 : 만SDR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한국	500	1,500	1,500
미국	500	500	500
EU 및 기타 유럽국	500	500	500
일본	450	1,500	1,500
카나다	500	500	500

* 양허한 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만 정부조달협정의 대상이 되고 그 금액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3] 해외건설에 미치는 영향

1. 국내건설산업은 건설시장개방에 따라 외국업체의 국내진출, 수주경쟁의 가속화 등 시장점식이 우려되나 해외건설산업은 외국 건설시장의 개방이라는 진출의 호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2. 특히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의 시장진입장벽이 정부조달협정의 발효와 더불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여 세계최대 시장인 선진국시장 진출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다.

3. 그러나 우리의 주된 진출대상국인 동남아, 중동국가들은 이미 상당부분 시장이 개방되어 있었으며 또한 대부분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시장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서비스분야에 대한 보조금협상이 타결될 경우 해외건설에 대한 정부지원을 기대할 수 없어 기업 자체의 자금력이 풍부한 선진외국업체들과의 경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VI. 해외건설현황 및 전망

[1] 해외건설 진출현황

1. 수주현황('97. 9. 30 현재)

1) '65년 현대건설이 태국 고속도로공사를 처음 수주한 이래 '97. 12까지 총 3,805건 1,450억불 수주

* '97년 수주실적 : 176건 140.3억불 수주(전년동기 대비 130%)

2) 지금까지 3,329건 958억불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현재 52개국에서 97개 업체가 476건 492억불의 공사를 시공중

- 외화가득액 : 229억불('65~'97 상반기)
- 외화가득률 : 21%(평균)
- 총 진출국 : 82개국
- 시공잔액 : 279억불
- 진출인력 : 5,758명(외국인력 60,259명)
- 보유장비 : 29,568대(국산 6,035 외산 23,533)

2. 진출추이

1) 연도별

(1) '81년에 137억불로 최고수주를 기록한 후 '81~'83까지 100억불대 수주를 기록하는 등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해외건설대국으로 부상한 바 있었으나

(2) 중동건설경기 퇴조와 과당경쟁에 따른 수익성 저하 등에 따라 하강국면에 접어들어 '88년에 16억불로 바닥권까지 하락했다가 '90년대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3) '94년 74억불, '95년 85억불을 수주하였고 '96년에는 83년 이후 13년만에 107억불로 100억불대의 수주를 기록하고 '97년에는 140억불로 대 최고의 기록을 달성했다.

(4) 연도별 수주추이

년도	전체	'81	'88	'91	'92	'94	'95	'96	'97
수주액	145,032	13,681	1,602	3,038	2,783	7,441	8,508	10,779	14,032

2) 지역별

(1) '70~'80년대 중동지역에 집중되었던 해외진출은 '90년대 들어 중동 의존도가 낮아지고(누계 63%→'97년 6%), 경제개발에 따라 발주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동·서남아 비중이 급상승하고 있으며(누계 29%→'97년 59%)

(2) 북방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94년에는 중국이 최대 진출국가로 부상하는 등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구 사회주의권 국가(체제전환국)와 미·일 등 선진국으로의 진출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3) 지역별 진출추이 [다음 쪽 표 참조]

3) 공종별 수주구조

(1) 과거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단순 토목·건축공정 위주의 수주체제는 인건비 상승과 기술력 향상, 고부가가치 추구 등에 힘입어 '90년대 들어 고부가가치 공사인 플랜트공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 수주구조

구분/년도	평균('65~'97)	'97
토 목	34.5%	19.2%
건 축	41.6	43.8
플랜트	19.4	34.6
용 역	1.0	0.1

4) 대기업 중심의 수주구조

(1) 최근 해외건설면허의 등록제 전환으로 해외건설업체가 급증하였으나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며

(2) 특히 상위 5개사의 수주비중이 막대하다.

(3) 상위기업에 의한 수주비중('97)

단위 : 백만불, %

	수주액	수주 점유율
상위 5개사	10,809	77.0
상위 10개사	12,472	88.9

단위 : 백만불

단위 : 백만불

	누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97
계	145,042 (100)	110 (100)	30,162 (100)	63,072 (100)	51,698 (100)	14,032 (100)
중동	91,027 (63%)	-	28,452 (94)	54,346 (86)	8,229 (16)	913 (6)
아시아	42,352 (29%)	86 (78)	1,434 (5)	7,499 (12)	33,333 (64)	8,277 (59)
기타	11,663 (8%)	24 (22%)	276 (1)	1,227 (2)	10,118 (20)	4,824 (35)

* 90년대 : '91~'97

3. 해외건설과 국민경제

1) 직접적인 기여도

(1) 외화가득으로 국제수지 개선

해외건설로 '97년 상반기까지 총 230억불의 외화를 벌어들임으로써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국내 경제에 활력을 제공

(2) 2차 석유파동시 ('81~'84) 석유수입대금의 36%를 흡수할 정도로 국가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당시 석유수입대금 : 238억불, 해외건설 외화가득 : 86억불)

90년대 이후 ('90~'97 상반기) 해외건설의 외화가득액은 57억불을 기록하여 동기간 무역수지 적자액 590억불의 9.7%를 보전했다.

(타산업 연관효과)+기자재수출 유발효과

(2) 총 고용효과는 80년대이후 280만명으로서 동기간 총 취업인구 28,794만명의 1.0% 수준

* 총 고용효과 : 해외취업 + 외화수입에 의한 고용유발 + 기자재 수출에 의한 고용유발

4) 기자재(장비, 자재)수출 기여효과

(1)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장비 및 자재를 수출함으로써 외화가득 뿐만 아니라 관련산업의 육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2) '80년 이후 장비, 자재의 직접 수출액은 22억불이며 이로 인한 추가적인 국민소득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6억불

(3) 해외현장에서의 국산 기자재 사용실적은

90년대 수출액과 해외건설 수주액 비교

단위 : 백만불

	'92	'93	'94	'95	'96	'97상반기	계
수출액	76,632	82,236	96,013	125,058	129,700	112,200	758,725
무역수지	-5,144	-1,564	-6,335	-10,061	-20,600	-10,500	37,898
해외건설 수주	2,783	5,117	7,441	8,508	10,779	10,415	54,847
외화가득액	371	850	765	839	1,278	651	5,711

* 외화가득액 = 외화수입 - 외화지급 + 관련기자재 수출 등 기타 외화가득액

3) 소득 및 고용효과

(1) 해외건설의 총소득효과는 80년대 이후 ('80~'95) 19조 344억원으로서 동기간 총 GNP 2,329조원의 0.8% 차지

* 소득효과 : 순외화수입 + 부가가치유발효과

총 사용액 대비 평균 10% 대에 머무르고 있으나 '90년대 들어 사용비율이 차츰 증가 [다음 표 참조]

2) 간접적 기여도

(1) 미수교국과의 국교수립 및 민간외교 기여 미수교국에 진출하여 국교수립의 교두보를 구

년도	총사용액(A)	국산(B)	외산	B/A
'85	1,738(백만불)	196	1,542	11.3(%)
'90	975	132	843	13.5
'96	1,501	326	1,175	21.7

축하는 등 냉전시대 경제외교에 기여

*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카타르, 이라크, 예멘, 리비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등과의 국교수립에 기여

(2) 국제적 이미지 제고

① 외국의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진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기념비적 건조물을 통해 우리 기업 및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마련

② 말레이시아 페낭대교(250백만불), 사우디 주베일항(939백만불), 싱가폴 래플즈시티(391백만불), 리비아 대수로 1,2단계(10,263백만불) 등 세계적 구조물 건설

(3) 기업의 국제화 및 선진기술 전파

① 국제계약, 관행 등의 숙지로 대외진출에 필요한 경험을 축적하였고 해외건설로 양성된 국제인력이 각 산업에 확산되어 대외진출의 중추 역할을 하는등 기업의 세계화에 일조

② 해외진출을 통한 선진기술과 경영관리기법을 습득하여 국내건설산업에 전파하는등 우리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

4. 세계 속의 위상

1) 국가별 매출액

(1) 지난 '80년 이후('80~'96) 국가별 해외수주액을 보면 미국이 1위로서 6,316억불을 수주

(2) 우리나라는 동기간 동안 전체의 4.5%인 894억불로 세계 7위

*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 한국 등 상위 7개국이 전체 세계 수주의 85.5%를 점유하고 있다.

국가별 해외수주액

단위 : 억달러

국가	'96	합계('80~'96)	점유율(%)
미국	225	6,316	39.6
일본	243	2,191	13.7
프랑스	163	1,868	11.7
영국	144	1,658	10.4
이탈리아	74	1,576	9.9
독일	135	1,453	9.1
한국	64	894	5.6

* ENR지에서 세계 225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서 중소업체들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총 수주액보다 적으며 '94~'96년은 매출액 기준임

2) 해외건설의 비중

(1) 우리나라의 건설투자액('96 1,100억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8%로서 상위 7개국 중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건설부문의 중요성이 높다.

(2) 건설투자액에 대한 해외건설 수주액비율은 영국이 19.34%로 제일 높고('93기준) 한국은 5위(4.74%)로서 건설투자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외건설의 비중이 크다.

[2] 해외건설 시장여건 및 새로운 역할

1. 해외건설 시장여건

1) 시장규모의 확대

(1) 세계건설시장의 규모는 '94년 현재 약 3조 달러(건설투자액 기준)로 세계 전체 GDP의 12.1% 수준이며 오는 2002년에는 4조 400억불로 확대될 전망이다.

*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39%, 유럽이 27%, 북미지역이 23%의 순

2) '90년 이후 해외건설 발주액(외국업체의 수주액)은 연 1,500억불 수준으로 건설투자액의 5% 내외이나 각종 인프라 확충과 시장개방으로 해외건설 발주액은 '96년 2,000억불에서 2002년 2,985억불로 증가할 전망이다.

* 지역별로는 아시아지역이 31.8%, 유럽이

21%. 중동 19.9%, 북미 11.2%, 아프리카 7.8%, 중남미 8.3%의 순

(3)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요 개도국들은 재정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에 절대 필요한 인프라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프라 투자는 대부분 민간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추진되고 있다.

* 향후 10년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지역의 인프라 투자는 약 2조 5,000억불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75% 정도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2) 해외건설 환경의 변화

(1) 금융요청공사의 증가

①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국내자본 부족으로 경제개발 및 고도성장에 필요한 대형 SOC의 개발 재원을 시공자에게 요청하고 있다.

②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능력(Project Financing) 등 시공업체의 금융동원능력이 수주 여부를 크게 좌우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2) 개발·투자형 공사의 증가

① 임금상승 등 가격경쟁력 약화로 과거의 단순도급공사에서 벗어나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는 개발·투자형공사로 전환되는 추세

② 시공사가 자금동원부터 분양까지 책임지는 개발형공사와 경영능력이 요구되는 대형 장기투자공사인 BOT공사에 대한 참여가 늘고 있다.

* 총수주중 개발형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 증가('93 10.8%→'96 31%)

(3) 현지화를 통한 세계화의 필요성 증대

① WTO체제 출범에도 불구하고 입찰참여제한, 현지자재 및 하도급 강요 등 외국업체를 차별하는 자국화 시책 및 시장장벽이 존재

② 시장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지법인 설립과 현지화의 협력강화 등 적극적인 현지화 노력이 필요하다.

(4) 경제협력과 공사발주의 연계

① 원조성 경제협력자금 제공국가에 공사참여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음

② 경제협력 외에도 시장개척 및 진출기반 확충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해외건설의 새로운 역할

1)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

(1) 최근 통상마찰 및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으로 상품수출이 애로를 겪고 있으며 관광 등 무역외 수지도 적자이다.

(2) 해외건설은 비교적 높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상품수출을 보완, 대체할 수 있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2) 국제경제질서 변화에 능동적 대응

(1) WTO 및 정부조달협정의 발효에 따른 세계건설시장의 개방을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호기로 활용한다.

(2) 소극적인 국내시장 방어전략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전략으로 전환하여 국내외 건설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3) 해외건설 연관효과 확대

(1) SOC건설을 통해 진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경제협력 촉진, 민간외교 증진, 우리나라 및 기업의 이미지 제고효과 등을 거둘 수 있다.

(2) 해외진출시 자재, 장비, 금융, 운송, 무역등 관련산업이 동반진출하며 진출국의 경제개발계획 참여를 통해 장기적인 진출기반을 확충한다.

4) 국내건설산업의 선진화 촉진

(1)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른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잠식을 보전하고 건설산업의 활로개척 및 세계화 추진을 위한 선도산업으로의 역할을 요구한다.

(2) 해외진출을 통해 선진기술과 경영관리기법을 습득하므로써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건설시장의 개방에 대한 근본 대처방안을 마련한다.

VII. 해외건설의 정책방향

[1] 해외건설의 과제

1. 금융 및 기술경쟁력 문제

(1) 우리 해외건설은 시공관리능력 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이나 기술능력 및 자금조달 능력면에서는 선진업체에 상당히 뒤지고 있다.

① 단순 토목이나 건축공정을 제외하고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특수분야 및 경영관리기법에 있어서는 선진업체의 70% 수준이며

② 자금조달능력, 프로젝트 파이낸싱 능력도 선진업체의 20~30% 수준

(2) 조사, 설계, 감리 등 엔지니어링 수준도 선진국에 뒤져 국산자재 사용 등 해외건설의 부가가치 제고에 한계가 있다.

2. 진출시장의 편중

(1) 70~80년대에는 중동시장이 주요 진출대상이었으나 90년대 들어 동·서남아와 중국지역에 집중 진출하고 있다.

(2) 특정지역에 진출이 집중되는 것은 국제정치의 불안정이나 경기침체 등에 따라 수주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3. 시장장벽의 잔존

1) 일본, 미국 등 선진국시장을 중심으로 기술자 인정제도, 자국산 구입의무 등 시장장벽이 부분적으로 잔존한다.

2) 이러한 시장장벽은 건설외교 및 WTO체제의 출범등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불공정한 시장관행 등 비제도적 측면의 시장장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 건설인력의 해외진출 저하

1) 제3국 인력에 비해 아국인력의 임금이 4~5배 높고 생산성도 임금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단순 기능공 등의 경우에는 사실상 경쟁력을 상실

(1) 이에 따라 해외현장에서의 아국인력 활용

이 저하되고 있다.

	'85	'90	'96
아국인력 비	71%	29	9

(2) 또한 국내임금 상승등 국내 근무여건이 향상되고 취업기회가 늘어나 해외근무를 기피하는 추세이다.

2) 조세감면 등의 유인책이 제공되고 있으나 우수인력의 자체양성과 생산성 향상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 기자재 경쟁력의 저하

(1) 해외현장에서 사용하는 기자재의 국산 사용 비율이 차츰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85 11.3%→'96 21.7%)

(2) 품질과 가격 뿐만 아니라 국제규격화, 표준화, 홍보, 마케팅 등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낮다.

[2] 해외건설 진출전략

1. 금융경쟁력의 제고

1) EDCF, 연불금융 등을 통한 개도국 진출기반 확충

(1) 원조성 경제협력자금과 공사발주가 연계되는 추세에 대응하고 우리 업체의 진출기반 확충 효과

(2) 수출효과 및 국산화율이 높은 기자재·통신·전력 등에 대한 지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개도국의 경제기반조성에 필수불가결한 SOC사업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2) 프로젝트 파이낸싱 능력의 제고

(1) 국제금융기관의 상업금융 등을 결합하여 대상 프로젝트의 수행에 가장 유리하도록 금융을 조달하는 파이낸싱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며

(2) 이를 위해 정책금융의 이용여건 개선과 업체의 금융전문가 양성이 절실하다.

3) 국책은행의 해외건설 보증발급

(1) 해외건설 수주 및 시공을 위해서는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등이 필요하나 국내 시중은행들이 BIS 자기자본률 준수를 위해 각종 보증의

발급을 기피하여

(2)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해외건설공사에 필요한 보증을 빌급토록 한다.

2. 건설기술 및 기자재, 인력개발

1) 기술개발지원

(1) 임금상승 및 인력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시공의 기계화, 신공법 개발 등 업계의 기술개발 추진시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으로 선정, 지원

(2) 외국의 선진기술의 도입과 국내 전파를 지원하고 외국의 주요 시공사례 등에 대한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2) 기자재 개발

(1) 국제규격화, 표준화 등 품질향상 뿐만 아니라 홍보, 인식, 마케팅면에서의 노력 제고

(2) 공장인증제 도입, ISO 인증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건설자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정기적인 기자재 전시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주요 엔지니어링사 등 해외수요자에 대한 국산기자재 홍보 강화

(4) 설계시 국산자재를 시방서(spec)에 반영 시킬 수 있도록 설계 및 용역기술의 향상을 추진하며 설계·시공을 함께 할 수 있는 개발형공사를 지원하고 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 엔지니어링 능력향상 등으로 프로젝트 창출 능력 강화

3) 전문인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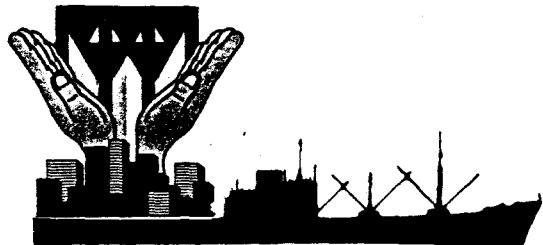
(1) 대학의 건설관련학과 정원 증원, 건설기술자격자 확충,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과정 설치 등으로 고급기술인력을 배출하고 기술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2) 해외건설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해외건설관련 교육훈련사업의 강화

3. 해외건설 정보체제의 구축

1) 「해외건설 종합정보서비스사업」추진

(1) 공사정보, 국별정보, 공사사례정보, 국제금



용정보 등 해외건설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인터넷을 통해 업계에 제공

(2) 한국전산원의 자금지원을 받아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현재 해외건설협회에서 사업을 추진 '97. 10 정식서비스 개시

(3) 궁극적으로 정부, 해외공관, 종합상사, 연구소, 재외공관, 건설교통관 등을 연결하는 종합 정보체제를 구축한다.

4. 기타사항

1) 해외수주시 발주처와의 협의과정과 외교적 고려 등 비가격적인 경쟁요소들이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이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외교의 중요성이 증대

(1) 신시장 개척을 위해 중남미와 동구권으로 시장조사단 파견

(2) 건설협력, 인적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 협력약정을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과 체결

2) 불공정한 시장판행이 남아있는 선진국가에 대해서는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각종 양자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동남아 등 주요 진출국에 대해서는 정례적인 건설협력체제를 구축

3) 우리 업체간 수직적, 수평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며 해외에서의 무분별한 수주경쟁을 피하고 상호협력을 강화

* 업계의 총의를 모아 자율적으로 제정된 해외건설협회의 수주자율 조정규정('94. 11)에 따라 수주협의회를 통해 수주경쟁을 자율조정하는 등 수주질서를 확립